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과 -

1. 2004. 11. 30. 제2004-335
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각하)

소유권 이전등기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및 등
록세 환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적법한
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소를 원인이
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
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환부신청을 하였다가 처분

청이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
신을 하였다 하여 이를 이의신청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
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 1. 17. ○○광역시 ○구
○○동 ○-○번지의 2필지 토지 359.2㎡중
349㎡와 그 지상 건축물 1,192.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
(590,601,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
세 11,812,020원, 농어촌특별세 1,181,200원,
등록세 17,718,030원, 지방교육세 3,543,600
원, 합계 34,254,8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2002.10.9.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

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2004. 7. 22.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자, 같은 날 처분청은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광역시장은 청구인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그 원인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인 없이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

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환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적법한 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생략…)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 1. 15. 매매 계약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1. 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1. 7. 4.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1. 7월경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 10. 9.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4. 7. 22. 청구인의 환부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에 의하여 강

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인없이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소를 원인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환부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하여 이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일인 2001. 1. 17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한 2004. 8.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 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4. 11. 30. 제2004-351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며, 개인사업체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산81-1번지의 6필지에서 2003. 9. 1부터 □□□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2004. 2. 25 동일주소지에서 (주)△△△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4. 7. 26 공장용건축물(연면적 6,689㎡,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나서, 법인장부가액 1,315,447,2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308,940원 농어촌특별세 2,630,890원, 합계 28,939,830원을 2004. 8. 6에, 등록세 10,523,570원 지방교육세 2,104,710원 합계 12,628,280원은 2004. 8. 5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81-1번지의 6필지에서 포장용 플라스틱성형용기를 제조업으로하는 □□□□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2003. 9. 1에 하고, 동일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주)△△

△△라는 법인을 2004. 2. 25 설립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04. 7. 26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에서 창업의 범위에 대해 동조제4항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의 범위

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번지의 6필지에서 2003. 9. 1부터 □□□□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4.2.25 동일주소지에서 (주)△△△△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4. 7. 26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번지의 6필지에서 포장용 플라스틱성형용기를 제조업으로 하는 □□□□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2003. 9. 1에 하고, 동일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주)△△△△라는 법인을 2004. 2. 25 설립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04. 7. 26 취득하였으나 개인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며, 개인사업체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

지, 법인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94호, 2004. 7. 26)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산○-○번지의 6필지에서 □□□□라는 개인사업체를 2003. 9.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9. 1부터 2004. 6. 30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제출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에서 알 수 있고, 비록 2004. 2. 25 (주)△△△△라는 법인을 □□□□와 동일장소에 설립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 사업주인 ○○○의 명의로 2004. 4. 16 건축허가를 얻고 착공신고필증을 ○○군수로부터 받았으나, 2004. 5. 13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에서 (주)△△△△로 변경하였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넘어서서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2004. 11. 30. 제2004-363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형할인점 내의 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결정요지】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할인점·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할인점·전문점 등은 이러한 시설이 포함된 의미의 대규모점포이므로, 할인점에 설치된 음식점 등 임대부분을 포함한 건물전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할인점으로 등록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직접적인 용역의 제공장소인 매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할인점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이 설치된 쟁점 부동산도 할인점 영업활동에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직접적인 할인점 매장면적과 함께 하나의 유통산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4. 6 ○○광역시 ○구 ○○동 118번지 토지 16,193.5㎡를 취득한 후, 2002. 7. 15 동 지상에 건축물 42,794.3㎡(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각각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

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할인점 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건축물 4,416.51㎡ 및 부속토지 1,671.22㎡,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3,748,948,01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1,979,790원, 지방교육세 13,196,290원, 합계 85,176,08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는 유통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시설로 사용하면서 이용객의 편의와 영업촉진을 위한 부대시설로 일부 매장을 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등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바, 음식점의 경우 농·축산물의 가공 및 조리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고, 카센터의 경우도 공산품의 소매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하겠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후단에서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센터 및 미용실도 유통산업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형할인점 내의 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

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 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차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유통산업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매장면적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각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 4. 7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2. 7. 8 대규모점포(대형점) 개설 등록을 하면서 상호는 ○○○○ ○○점, 영업장 면적은 23,357.94㎡, 매장면적은 13,805.31㎡으로 등재한 다음 2002. 9. 7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은 주차장 및 사무실 등으로,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판매시설로, 지상 3층은 음식점, 시계점, 문화센터, 미용실 등으로, 지상 4층은 사무실, 옥외주차장, 카센터 등으로 각각 사용하면서, 지상 3층과 지상 4층의 음식점, 시계점, 문화센터, 미용실 및 카센터 등은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형할인점 내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영업촉진을 위하여 임대운 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등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할인점·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할인점·전문점 등은 이러한 시설이 포함된 의미의 대규모점포이므로, 할인점에 설치된 음식점 등 임대부분을 포함한 건물전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할인점으로 등록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해석(유통물류과-289, 2004. 4. 27)하고 있고, 직접적인 용역의 제공장소인 매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할인점 일부를 임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이 설치된 쟁점 부동산도 할인점 영업활동에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직접적인 할인점 매장면적과 함께 하나의 유통산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 7. 8. ○○광역시시장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2002-2호, ○○○○ ○○점)을 필하고 쟁점 부동산을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의 용도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부동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후단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2004. 12. 29. 제2004-376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많다는 사정으로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취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한 상속재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 9. 22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친 소유의 ○○광역시 ○○○구 ○○동 ○○○-○번지 ○○○ ○○○호 등 41개 호(대지 281.80㎡, 건물 2,756.3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청구인이 상속받고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908,226,6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114,110원, 농어촌특별세 4,198,090원, 합계 51,312,200원(가산세 포

함)을 2004. 7. 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 12. 19 ○○지방법원(사건번호 ○○○○느단○○○○호)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454,063,622원보다 소극재산(채무 한화 3,662,401,810원, 미화 3,000,000달러)이 훨씬 많으며, 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제3호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과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 9. 22 부친인 청구외 망 ○○○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2003. 12.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의 취지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실제로 상속하는 재산이 없을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의 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한정상속승인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많다는 사정으로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취득”을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한 상속재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2004. 12. 29. 제2004-389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경정)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보세참고용 토지의 최대 사용 면적산정 시 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의 야적면적과 수출용 자동차의 최대 야적(장치)면적의 적용에 대한 쟁점

【결정요지】

종합토지세는 계약내용이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사실상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단순히 보관료 산정을 위해 사후에 작성된 화물장치변경계약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으나, 화물장치변경계약서상에 나타난 평균 재고대수 및 사용면적은 사실상의 현황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물품의 보관면적에 관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최대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점 등을 감안치 않은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2001. 3. 31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의 제3보세장치장에 수출용자동차 3,637대를 장치하기로 하는 화물장치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서상의 계약면적과 보관료 산출내역 등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산출하여 부족 징수된 2003년도 종합토지세 142,669,250원, 지방교육세 28,533,850원, 농어촌특별세 21,391,560원, 합계 192,594,660원을 2004. 8. 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3보세장치장용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와 수출용 자동차 1대당 필요보관(장치)면적을 8평으로 협의하여 보관기간(2001. 3. 1~3. 31) 중의 평균 야적 자동차 대수인 3,637대를 기준으로 보관료 및 화물장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합토지세가 현황과세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별도합산과세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은 계약서상의 평균 야적 자동차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보관면적이 최대인 시점의 최대 야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1. 3. 16에 장치대수가 7,795대로서 1대당 8평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최대면적은

62,360평이므로 2004. 8. 16에 부과지된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보세창고용 토지의 최대 사용 면적산정 시 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의 야적(장치)면적과 수출용 자동차의 최대 야적(장치)면적의 적용에 대한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1항에서는 주차장의 최소한의 주차단위 구획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제3보세장치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창고에 해당

하며, 청구인은 1999. 8. 31. (주)○○자동차와 화물장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1대당 필요 장치면적을 8평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고, 2001. 3월 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에서는 1개월간 평균 장치 자동차 대수에 1대당 8평을 적용하여 산정된 면적 29,500평을 기준으로 제3보세장치장 중 D, I, J, K, L, M블록을 장치구역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의 면적은 월평균 장치면적으로 장치료 산정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정한 구역에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선 최대사용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2001. 3. 31체결한 화물장치변경계약서상에서 이 사건 제3보세장치장 중 D, I, J, K, L, M 블록을 장치구역(이하 ‘이 사건 장치구역’이라 함)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관료 산출근거 자료에서 위 장치구역의 면적이 29,100평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최대사용면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있으나, 매 월 말 작성되는 화물장치변경계약서는 사실상 장치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균 장치대수에 자동차 1대당 사용면적(8평)을 적용하여 평균사용면적을 산출하고 이와 비슷한 면적에 해당하는 블록을 편의상 지정하여 사후에 체결한 것으로서, 한 달 간의 보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달 말에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대비 면적현황자료에는 매일 입출고되는 차량대수와 재고대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2001. 3월 한 달의 평균재고대수는 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에 나타난 대로 3,637대 {112,871(총 재고대수)/31일×8평=29,128평(1일 평균 사용면적)}, 이 사건 장치구역의 면적=29,100평, 29,100평/8평=3,637대} 이지만, 최대 재고대수는 2001. 3. 16에 7,795대임을 알 수 있고, 종합토지세는 계약내용이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사실상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단순히 보관료 산정을 위해 사후에 작성된 화물장치변경계약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으나, 화물장치변경계약서상에 나타난 평균 재고대수 3,637대 및 사용면적(이 사건 장치구역의 면적) 29,100평은 사실상의 현황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물품의 보관면적에 관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최대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점 등을 감안치 않은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최대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최대 자동차 장치대수인 2001. 3. 16의 7,795대에 자동차 1대당 장치(보관)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 1대당 장치면적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여진 법령이나 기준이 없고,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정하면서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나, 수출차량을 보관(장치)하는 보세장치장은

수출차량의 특성상 국가별 차종별 구분보관(장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경비초소, 운송작업공간, 작업장비 대기공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주차장의 주차면적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의 (주)○○○○○와 체결한 화물장치계약에서 임치기간을 1999. 8월에서 2001. 3월까지로 하고 자동차 1대당 사용면적을 8평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주)○○○○○와 체결한 계약에서도 임치기간을 1998. 10월에서 1999. 6월까지로 하고 자동차 1대당 사용면적을 8평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세장치장의 경우 자동차 보관(장치)면적을 8평이라고 보는 것은 동 업계의 관습화된 임치기준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서 2001. 3. 31 체결된 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에 적시된 장치구역(D, I, J, K, L, M 블록)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시 자동차 1대당 사용면적을 8평으로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업계의 관습과 다르지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1대당 장치면적은 8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 과세표준 면적을 $222,166.6\text{m}^2(7,795\text{대} \times 8\text{평} = 62,360\text{평}, 62,360\text{평} \times 3.3 = 205,788\text{m}^2, 205,788 \times 1.2\text{배} = 246,945.6$, 여기서 특허보세구역 적용을 받는 면적은 제3보세장치장 전체면적 $222,166.6\text{m}^2$ 임)로 하고, 나머지 보세장치장이외의 면적($214,876.0\text{m}^2$)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2004. 12. 29. 제2004-392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양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수양관 취득 목적이 청구인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 기도,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러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동기에 있고, 그 사용도 예배, 기도, 교육, 훈련, 신도 간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양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수양관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8. 2 청구인 소

유의 ○○도 ○○군 ○○면 ○○리 ○○○-○○번지상에 수양관용 건축물 468.36㎡(이하 “이 사건 수양관”이라 함)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 3. 3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의 현장확인 결과 상시 종교활동에 공여되는 일반교회 건물과는 달리 교인들의 영적인 심신수양 등을 위한 장소로 필요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양관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127,4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1,040원, 농어촌특별세 158,670원, 등록세 692,410원, 지방교육세 126,940원, 합계 2,709,060원(가산세 포함)을 2004. 7. 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 특성에 따라 매일 예배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만 예배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 빈도수를 기준으로 종교시설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는 바, 이 사건 수양관은 교회 신도들의 영적인 종교활동을 통한 신앙수련을 하는 곳으로서, 여름과 겨울은 물론 매월 1~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만일 수양관이 없다면 다른 교회의 수양관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겠으므로 교회에 필요불가결한

종교시설이라 하겠고, 수양관을 다른 교회에서 이용할 때에도 관리차원에서 감사헌금을 받고 있기는 하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양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680-4번지상에 2000. 8. 2 수양관을 신축한 후 2000년도에 5회, 2001년도에 9회, 2002년도에 11회, 2003년도에 11회, 2004년도(10월말 현재)에 6회 정도 청구인 소속

교역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교역자 세미나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과 2003년도에는 2회(8.4.~8.6, 80명·8.7.~8.9, 50명), 2004년도에는 3회(7.26.~7.28, 90명·7.29.~7.31, 50명·8.12.~8.14, 25명)에 걸쳐 다른 교회 소속의 수양회 장소로 사용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양관을 매월 1~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만일 수양관이 없다면 다른 수양관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교회에 필요불가결한 종교시설이라 하겠고, 수양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수양관 취득 목적이 청구인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 기도,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러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동기에 있고, 그 사용도 월 평균 1회 정도 예배, 기도, 교육, 훈련, 신도간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양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연간 7,700,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양관신축 사업계획서와 수양관 사용현황 일지 및 2004년도 예산안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수양관이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 제공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8. 4부터 연 2~3회(2003년도 : 2회·6일·130명, 2004년도 : 3회·9일·165명) 정도 제공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수양관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수양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2004. 12. 27. 제2004-398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동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상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나 동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는 2년 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다음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화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 ○○시 ○○동 ○○○○-○○ ○○공단 ○○○○의 공장용지 1,9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9. 12. 4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 3. 14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2000. 8. 22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523㎡를 신축 취득한 후 2001. 3. 13 공장등록을 필하고 사진재료약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 2.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2. 3. 9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인 2003. 8. 6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추정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336,481,4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75,540원 농어촌특별세 740,250원 등록세 12,113,320원 지방교육세 2,220,760원 합계 23,149,870원(가산세포함)을 2004. 7. 8 부과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9. 12. 4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00. 3. 14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00. 8. 22 공장용 건축물 1,563㎡를 신축한 후 2000. 11. 21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1. 3. 13 공장등록을 한 다음 사전재료약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2. 2.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하고자 2003. 8. 6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날로부터도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였음에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동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상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나 동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9. 12. 4.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 3. 14.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00. 8. 22 공장용 건축물 1,563㎡를 신축한 후 2001. 3. 13 공장등록을 한 다음 사진재료약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2. 2.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업종을 변경(중력주조제조업)을 변경하고자 2003. 8. 6 이 사건 토지와 동 공장용 건축물을 매각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02. 2. 9로부터 2년 이내인 2003. 8. 6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지하였지만,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 공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 투기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동산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 12. 1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 3. 14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0. 8. 22 공장용 건축물 1,563㎡를 신축한 후 2001. 3. 13 공장등록을 필한 다음 사진재료약품제조업을 계속한 사실이 안산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사실증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2002. 2. 9)로부터는 2년 내에 매각(2003. 8. 6)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공장등록일 2001. 3. 13)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에 토지사용승낙(2000. 3. 14)을 받고 공장용 건축물 1,563㎡를 신축(2000. 8. 22)하여 공장등록(2001. 3. 13)을 필한 다음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2003. 8. 6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